

韓國 新聞을 通해서 본 民主主義 價値受容

劉 載 天

I. 서 론

III. 「독립신문」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가치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IV. 결 론

I. 서 론

현대 산업 사회가 지니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정치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우리는 현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이상들(Ideals)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체제로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심각한 갈등에 당면해 왔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갈등의 근원은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우리 문화의 규범 체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가치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한 사회의 가치체계는 그 사회의 정치 질서의 기반이 되며, 개인의 정치 참여와 같은 정치행위는 물론 정치적 집단의 유형을 규정하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정치과정의 사회적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치제도를 포함한 모든 사회의 주요 제도들은 가치와 이상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Talcott Parsons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체계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 지향의 체계가 사회체계의 구조와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준거점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 체계는 그것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건 혹은 사회의 역

사로부터 도출해 내진 민족이나 집단의 오랜 경험에서 형성되고 전승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 나라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데 기초가 되는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한가지 유용한 접근 방식은 역사적인 고찰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뜻에서 특히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 가치가 전통 가치와 어떻게 갈등을 빚으면서 수용되어 왔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대체로 가치의 측정은 예컨대 선택과 관련된 진술이나 선호의 진술과 같은 평가적 진술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 지거나 또는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적 혹은 선호적인 현재적 행동을 관찰함에 의해 추론하는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 가운데서 가치체계의 역사적 분석은 말할 것도 없이 기록된 평가적 진술을 토대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매스 미디어에 게재된 평가적 진술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평가적 진술은 신문의 경우 일반 보도 기사에서 보다 논설이나 해설 기사에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신문을 대상으로 한 가치분석은 논설이나 논평, 시평, 칼럼, 해설기사 등을 자료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 신문은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은 우리 나라 신문의 발생과 성장 과정에서 잘 엿볼 수 있다. 즉 서구의 근대적 신문이 정보 유통에 대한 절충하는 사회적 요구와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 발전해 온데 반해 우리 나라의 근대적 신문은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국으로부터 이식되어 성장, 발전해 왔다. 우리 나라에 최초로 근대적 신문이 등장하였던 구한말에는 보수세력과 개화 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開化의 수단으로써, 그리고 점차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던 제국주의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國權을 보전하고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 나라에 신문이라는 新文物이 이식되었다. 그 뒤 일제의 식민 통치시대에는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역량의 배양과 식민정책에 대한 저항

의 수단으로서 신문이 존재하여 왔다.

우리 나라 신문이 이와 같이 사회적, 정치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 신문들의 使命觀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1883년에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漢城旬報가 창간된 이래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까지 우리 나라 신문은 나라의 자주독립을 성취하고 국민을 계몽하며 민주적인 민족국가를 수립할 것을 주된 사명으로 삼아 왔다. 이와 같은 사명관은 우리 나라 신문으로 하여금 정보의 전달을 원초적인 기능으로 삼고 발전되어온 서구의 신문과는 다른 신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말하자면 서구 신문의 기능이 환경변화의 측면을 강조해 왔다면 우리 나라 신문은 그와는 달리 規範的 측면에 특히 역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 신문 특히 구한말과 일제 식민 통치하의 민족신문들은 規範新聞이었다고 규정해도 좋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하고 우리 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던 「독립신문」에 반영된 민주주의 가치를 분석한 것이다.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독립신문」의 성격

우리 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徐載弼에 의해 창간되었다.¹⁾ 「독립신문」은 법률상으로는 徐載弼의 私有企業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제의 내용을 보면 국내 개화파와 徐載弼의 합작으로서, 한국 정부의 자금을 의해서, 한국 정부의 지원하에, 한국의 필요에 의해

1) 「독립신문」의 창간과 폐간 경위 및 신문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李光麟, “徐載弼의 「독립신문」 刊行에 대하여”, 李光麟, 韓國開化思想研究(서울: 一潮閣, 1979), pp. 152~198.

愼鏞廈, “독립신문의 創刊과 그 啓蒙的 役割”, 愼鏞廈, 獨立協會研究(서울: 一潮閣, 1976), pp. 1~80.

서, 한국어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신문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²⁾ 「독립신문」은 창간사에서 (1) 不倫不黨 (2) 신분과 지방의 차별없이 모든 백성을 평등하게 대하고 (3)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대변하며 (4) 정부와 백성 사이의 의사 소통 기능을 하고 (5) 한글을 전용하고 띄어쓰기를 하는 한편 신문 구독료를 싸게 하여 모든 백성이 신문을 읽도록 하며 (6) 부정부패, 탐관오리, 불법 행위 등을 고발하고 (7) 백성에게 나라안 사정을 알리며 (8) 외국 사정을 알리고 (9) 영문판을 발간하여 한국 사정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와 같은 취지로 창간된 「독립신문」은 1898년 12월 4일자를 마지막으로 폐간될 때까지 한글판 776호, 영문판 442호를 발간한 바 창간 첫해인 1896년에는 1주 3회, 1897년에는 격일간, 1898년부터 폐간때까지는 일간으로 발행되었다. 또 창간호부터 시작하여 1898년 5월 중순까지는 徐載弼가 주관하였고, 그 뒤부터 1899년 1월 초까지는 윤치호가, 다시 그 뒤부터 폐간까지는 영국인 H. Emberley가 맡았으며, 서재필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의 명의상의 발행인은 아펜셀러였다.

「독립신문」을 창간 당시 약 300부를 인쇄하였고, 1898년 말경에 3,000부를 발행하였다고 하나 확실한 발행부수는 명확치 않다. 이러한 발행부수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보잘것 없는 부수에 지나지 않지만 「독립신문」이 창간될 당시 일본측이 발행하던 「漢城新報」의 발행부수가 약 2,000부였다는 점에 견주어보면 그 때 기준으로는 결코 적은 부수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독립신문」은 1부를 약 200명이 돌려가며 보았다는 기록 등을 감안한다면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³⁾ 愼鏞廈 교수는 「독립신문」이 창간된 때부터 폐간될 때 까지를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분했다.⁴⁾

제 1기 : 창간(1896. 4. 7)~1896. 7. 2 까지

2) 愼鏞廈, 앞책, p. 4.

3) 李光燾, 앞책, p. 177.

4) 愼鏞廈, 앞책, p. 40.

제 2 기 : 1986. 7. 4~1898. 5. 11 까지

제 3 기 : 1898. 5. 12~1898. 12. 30 까지

제 4 기 : 1899. 1. 1~1899. 12. 4 까지

그리고 위의 각 시기의 특징적 성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⁵⁾

(1) 제 1 기 : 「독립신문」이 창간된 다음 독립협회가 창설될 때 까지로, 이 기간에 독립신문의 논조는 국민의 계몽을 주로 하였으며, 정부에 대하여 매우 협조적이었다.

(2) 제 2 기 : 독립협회 창립 이후부터 1898년 5월 徐載弼이 「독립신문」을 尹致昊에게 인계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까지로 독립협회의 독립문, 독립공원, 독립관 건립운동을 지원하고 독립협회 회원과 국민의 계몽에 주력했다.

(3) 제 3 기 : 尹致昊가 「독립신문」의 주필이 된 이후부터 독립협회가 해산당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독립신문」은 명실공히 독립협회의 기관지가 되어 自主民權 自強운동을 지원하고 독립협회의 주장을 대변했다.

(4) 제 4 기 : 독립협회가 해산당한 이후부터 독립신문이 폐간될 때까지로 신문의 논조는 종래의 「독립신문」의 논조를 원칙적으로 지속하였으나 그 내용과 표현방식이 모두 온건하게 되고, 정부의 정책비판보다 주로 국민의 교육계몽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독립신문」의 공헌에 대해 李光麟 교수는 세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⁶⁾ 즉 첫째, 1890년대 후반기 「독립신문」은 국민들에게 국가의 자주 독립의식을 갖게 하고, 自主民權思想을 북돋아주는 한편으로 여론형성의 첫 싹을 틔게 했다. 다른말로 표현한다면 「독립신문」은 개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립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 둘째, 국민들은 「독립신문」을 통해 언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호응하여 1986

5) 뒷책, pp. 40~45.

6) 李光麟, 앞책, pp. 197~198.

년 12 월에는 「大朝鮮獨立協會會報」, 1898 년에는 「每日新聞」, 「매국신문」 「京城新聞」, 「皇城新聞」, 「大韓新報」, 「協成會會報」 등의 여러 가지 일간과 주간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세째, 「독립신문」을 통해 취득한 자주 독립과 자유 민권사상은 1900 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들간에 근대적인 교육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애국 계몽운동으로 크게 발전되었던 것이다.

한편 愼鏞慶교수는 「독립신문」이 당시의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행한 계몽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⁷⁾

첫째, 「독립신문」은 당시 한국의 ‘인민의 개명진보’를 위하여 지대한 계몽적 역할을 수행했다. 둘째, 자주독립과 국가 이익의 수호를 위하여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세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수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네째, 한글전용, 띄어쓰기, 쉬운말 쓰기를 시작하여 민족언어와 문자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다섯째,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탐관오리들을 서슴없이 고발했다. 여섯째, 독립협회의 창립을 위한 일종의 사상적 준비작업을 하고 독립협회의 창립 후에는 그 기관지 구실을 하면서 독립협회의 사상의 형성과 독립협회의 自主民權 自強運動의 전개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일곱째, 1898 년의 萬民共同會 운동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여덟째, 한국 민중에게 사회적 역할과 그 중요성을 알게 하고, ‘여론’과 ‘공론’을 형성하여 사회 정치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을 성립시켰으며, 光武初期의 신문과 출판물의 발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홉째, 한국인에게 세계 사정을 알게 하고 국제 정세의 변동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게 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문물을 소개하여 한국인의 시야를 넓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 열째, 영문판인 「The Independent」는 당시의 한국 사정을 한국인의 입장에서 세계에 알리고 한국인의 의사와 주장을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愼교수는 「독립신문」의 한글 전용과 띄어쓰기 및 국어쓰기

7) 愼鏞慶, 앞책, pp. 45~54.

실행의 사상적 배경을 민주주의 사상과 민족주의 사상의 복합체로 규정하고 있다.⁸⁾

한편 우리는 「독립신문」의 사상적 배경이나 또는 신문에 반영된 가치를 분석할 때 徐載弼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여긴다. 왜냐하면 「독립신문」은 그의 주관아래 창간되었고 또 간행되었으므로 徐載弼 개인의 영향이 막대했겠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다양한 교육을 받았으나 그 중에서 특히 미국 고등학교 3년간의 생활을 통해 18세기 이후 유럽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계몽 사상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철저히 체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독립신문」의 논설과 기사를 통해 自由, 平等, 權利의 중요성을 가르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⁹⁾

2. 가치와 가치 정향(Value orientations)

가. 가치 개념의 내포와 외연

코넬 대학교의 가치 연구 그룹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치’라는 용어는 내포와 외연이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개념이며, 나아가 각 학문 분야에서 쓰는 ‘가치’의 개념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¹⁰⁾ Charles Morris의 경우 “가치에 관한 연구는 선호적 행위에 대한 과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여러 문헌을 보면 ‘가치’란 태도, 동기, 목표, 측정 가능한 성질(qualities), 행위의 본질적 영역, 정감이 개재된 관습이나 전통 혹은 개인, 집단, 대상, 사건들 사이의 관계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만큼 개념이 혼돈되어 있다.¹¹⁾ 실제로 가치라는 개념은 심리학의 태도, 욕구, 정조(Sentiment), 성향(Disposition), 관심, 선호, 동기, 고착(Cathexes), 유인가(Valence) 등의 개념

8) wert, p. 20.

9) 李光麟, “徐載弼의 開化思想”, 李光麟, 韓國開化思想研究, p. 148.

10) Kluckhohn, Clyde and others,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alcott Parsons and Edward A. Shils(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 Row, 1951), pp. 388~433.

11) *Ibid.*, p. 390.

과, 인류학의 문화 형태, 주제, 의무(Obligation), 생활양식, 에토스와 같은 개념들,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쓰는 관심, 윤리, 이념, 원규(Mores), 규범, 태도, 열망, 의무, 권리, 제재(Sanction) 등의 개념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개념상의 혼란이 가중되기도 한다.¹²⁾ 따라서 '가치'라는 개념이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수렴하는 접합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문학의 연구를 통합하는 관건이기도 하지만 일반화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그러한 구실을 하는데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가치'의 개념을 사회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개념 정의들에 공통으로 내포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추출해 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나. 가치와 가치 정향의 개념

몇 사람의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의 '가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lyde Kluckhohn: '가치'란 현재적이든 혹은 잠재적이든, 또는 개인의 특질이든 혹은 집단의 특성이든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행동의 양식, 목적, 수단 등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願望의 개념이다. 이 개념 정의에서 강조되어야 할 요소는 情操的(願望), 인지적(개념), 動能的(Conative) (선택) 요소들이다.¹³⁾

(2) Thomas and Znaniecki: '가치'란 어떤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접근 가능한 경험적 내용을 가진 자료와 행동의 목표들과 관련된 의미를 이해하겠끔 만드는 개념이다.¹⁴⁾

(3) William I. Thomas: 사회적 '가치'란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접근 가능한 경험적 내용과 행동의 목표 뿐 아니라 행동의 목표가 될수 있

12) Robin M. Williams, "The Concept of Values," in Davi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9(New York: The MacMillan Co. & Free Press, 1968), pp. 283~287.

13) C. Kluckhohn, op. cit., p. 335.

14) Ibid., pp. 388~433.

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자료를 뜻한다. 그러므로 '가치'는 행위자의 대상 또는 목표를 나타낸다.¹⁵⁾

(4) Talcott Parsons : '가치'는 집합체를 위하여 어떤 방향 혹은 어떤 종류의 행위를 지지하고, 따라서 집합체 속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이끌어 내는 개인의 몰입으로 이해된다.¹⁶⁾

(5) Stephen C. Pepper : '가치'란 용어는 관심, 기쁨, 취향, 선호, 임무, 도덕적 의무, 욕망, 願望, 필요, 싫어하고 좋아함 및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선택의 경향을 뜻한다.¹⁷⁾

(6) Ralph B. Perry : '가치'란 인간에게 관심 있는 어떤 것이다.¹⁸⁾

한편 Parsons는 세 가지 양상의 동기적 정향에 따라 문화 유형을 관념의 체계(인지적 수월성), 표현적 상징체계(情操的 수월성), 가치 정향의 표준 체계(평가적 수월성)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¹⁹⁾ 그에 의하면 인간의 구체적 행동은 인지적, 情操的, 평가적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들 범주는 상징 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주된 준거점이 된다. 인지적 기능을 가진 상징체계는 신념 혹은 관념이라 부를 수 있다. 또 情操的 기능을 지닌 상징 체계는 표현적 상징들이라 할 수 있으며, 평가적 기능을 가진 상징체계는 규범적 아이디어 혹은 규제적 상징들이라 부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가치 정향의 표준 혹은 體現되는 정향의 방식이다. 즉 인지적 상징체계는 인지적 방식들로서, 이들 방식은 외적인 상징적 대상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표현적 상징체계는 감정을 주는 방식이며 가치 정향의 표준 체계는 평가의 방식들, 즉 다양한 단위들 사이의 갈등 해소의 방식이다.

15) Nicholar S. Timasheff and George A. Theodorson, *Sociological Theory: Its Nature and Growth* (New York: Ramdom House, 1976).

16) Parsons and Shils, op. cit., pp. 159~189.

17) Stephen C. Pepper, *The Sources of Value*(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1958), p. 7.

18) Ralph B. Perry, *Realms of Value: Critique of Human Civilization*(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54), Quoted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op. cit., pp. 283~287.

19) Parsons and Shils, op. cit., pp. 162~164.

즉, 다양한 신념들, 다양한 소망들, 다양한 평가적 기제 사이의 갈등 해소 방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번째 유형의 상징들(가치 정향의 표준)은 다시 인지적—情操的—평가적 특성에 따라 하위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인지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지닌 평가적 상징들은 인지적 표준으로, 情操的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지닌 평가적 상징들은 情操的 표준으로, 순수한 평가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가진 상징들은 도덕적 표준으로 분류된다. 이를 요약하면 가치 정향의 표준 유형은 인지적, 감성적, 도덕적 타입으로 분류된다.²⁰⁾

이 밖에 Clyde Kluckhohn은 가치정향을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자연,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반화 되고 조직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²¹⁾ Florence Kluckhohn은 모든 민족이 어느 때나 그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발전해야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공통문제가 있고, 그것의 해결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가치정향을 강조했다.²²⁾

이상과 같은 ‘가치’나 ‘가치 정향’의 개념 정의를 볼 때 어떤 하나의 記述的 定義도 인식할 수 있는 가치 현상의 다양성과 모든 범위를 완전히 포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가치’의 개념을 광의로 정의한다면 모든 행위에 내포된 가치 요소에 주목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는 반면, 협의로 정의하면 구체성과 명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의의 정의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가치의 관념에 밀접히 관련된 개념들이 배제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분석의 편이나 또는 실용성을 위해 ‘가치’나 ‘가치정향’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편이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대체로 ‘가치’나 ‘가치정향’의 여러 다양한 개념 정의를 보면 선택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평

20) Ibid., pp. 162~164.

21) C. Kluckhohn, op. cit., p. 411.

22) Florence R. Kluckhohn and Fred L. Strodbeck,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Ill.: Row, Peterson and Co., 1961), pp. 1~48.

가치 상징으로 개인과 집단의 추상화된 願望이라는 공통점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치'를 사회적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목표 혹은 의도의 한 표현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공통된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이와 같이 볼 때 그러한 공통된 관점들을 '가치'나 '가치 정향'에 대한 광의의 의미로 채택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 분석을 위해 유용하리라고 본다.

다. 가치와 가치 정향의 분류

분석을 위한 가치와 가치 정향의 분류 역시 사회학자, 인류학자 및 심리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 Florence Kluckhohn의 다섯 가지 가치정향—인간성,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시간, 인간관계, 행동의 가치정향—은 널리 알려져 있다.²⁴⁾ 이 밖에 몇 사람의 가치 분류 체계를 보면 C. Golightly는 본질적 가치와 조작적 가치로, C.I. Lewis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로, 코넬대학교의 가치 연구 그룹은 원칙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로, R.B. Perry는 긍정적—부정적 가치, 진보적—순환적 가치, 잠재적—행동적 가치로 각각 분류한다.²⁵⁾ 이러한 다양한 분류 방식들 가운데서 가치를 여러 차원에 따라 세분한 것은 John W.M. Whiting의 방식일 것이다.²⁶⁾ 그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차원(Dimension)의 개념을 원용하여 가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1) 樣式의 차원 : 긍정적 가치, 부정적 가치
- (2) 내용의 차원 : 심미적 가치, 인지적 가치, 도덕적 가치
- (3) 의도(Intent)의 차원 : 도구적 가치(조작적 가치), 목표 가치(궁극적 가치 혹은 본질적 가치)
- (4) 일반성의 차원 : 어떤 가치는 어떤 상황이나 혹은 어떤 내용의 영역에서 구체적이다. (전형적인 예는 역할 가치) 그러나 다른 가치들은 광범

23) Alex Inkeles, *What is Sociology* (New York: Prentice Hall, 1964).

24) F. Kluckhohn, op. cit.,

25) C. Kluckhohn, op. cit., pp. 388~433.

26) Ibid., pp. 413~421.

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 가치와 일반적 가치로 분류할 수 있다.

(5) 強度의 차원 : 가치의 強度는 내적 혹은 외적으로 적용된 제재(Sanction)을 관찰하거나 혹은 상태, 대상, 사건을 유지하거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관찰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強度에 따라 가치를 분류한 좋은 본보기는 Florence Kluckhohn 이 제시한 dominant-variant-deviant로 가치를 유형화한 것일 것이다.

(6) 顯在性的 차원 : 현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

(7) 범위의 차원 : 특유의 가치(Idiosyncratic value), 개인적 가치, 집단의 가치, 보편적 가치

(8) 조직의 차원 : 가치가 얼마나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지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가치를 생각할 때 위계적 개념이 거의 항상 존재한다. “.....보다 더.....”가 그러하다. 가치의 한가지 기본적 특질은 차별적 행위라는 점에 있다. 만약 가치에 위계가 없다면 사람의 삶이란 오로지 물리적, 생물학적 의미와 관련된 자극에 대한 일련의 반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의 가치나 가치 정향의 분류 방식을 살펴 보았지만 가치나 가치 정향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구 목적에 적용할 만한 단일한 분류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하겠다. 따라서 가치와 가치 정향의 분류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선택하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3. 민주주의 가치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산업 사회의 여섯가지 지배적 가치로 (1) 물질주의 (2) 성공 (3) 작업과 활동 (4) 진보 (5) 합리주의 (6) 민주주의를 들고 있다.²⁷⁾ 현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는 가치로

27) James W. Van den Zanden, *Soci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9), pp. 237~240.

추구되어 왔다. 즉 민주주의는 그것 자체가 전체적인 진화적, 사회적 역사로부터 도출된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 이상들(Ideals)에서는 개념상의 일치를 보이나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의 면에서는 다양성을 보이는 등 여러 관점의 차이를 들어 낸다.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이상들이나 혹은 민주주의 가치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가에서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러한 이상들이나 가치들에 기반을 두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정치 체제의 여러 형태에 따라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가치의 추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에 한정시켜 보기로 했다.

학자들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편이상 몇 가지 정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란 문명을 지향하는 사회의 운동을 조정하는 정치체제이다. 즉 우리의 관계와 집단을 조화롭게 만드는 방식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의 이상에 보다 근접해 가게 된다.²⁸⁾

(2) 語源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민주주의의 일차적 의미는 정부 형태에 관련되어 있다. 고전적 전통에 따르면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정부와 대조되는 것으로 다수에 의한 정부를 의미한다. 즉 인민에 의한 정부를 뜻한다. 즉 전체 인민에게 귀속된 주권과 인민에 의한 직접적, 혹은 그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공무담임자 officers)에 의해 지배되는 정부형태이다. 현대에는 세습되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특권이나 계층의 차이없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상태를 지칭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²⁹⁾

28) Leslie Lipson, *The Democratic Civilizati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4), pp. 237~240.

29) J. Roland Pennock, *Democratic Political Theory*(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79), p. 3.

(3) 민주주의란 용어는 일단의 이상들과 정치체제 양자를 지적하는 개념이다.³⁰⁾

이상과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들 속에도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유, 평등, 정의, 主權在民, 혹은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의 이상들을 민주주의 가치로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치를 보다 명확히 추출하기 위해 몇몇 학자들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1) Leslie Lipson의 견해 : 민주주의를 포함한 모든 정치 철학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몇가지 기본적인 토착이 있다. 그것은 첫째, 지역 사회내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위치는 본질적으로 그의 자유의 문제이며,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그들의 자유의 문제”에 귀결된다. 자유와 평등의 양자는 정부 형태와 활동에 따라 깊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개념들이다. 그러나 또한 정부보다 다른 집단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사회적 개념이기도 하다. 세번째 토착인 개인과 정부, 집단과 정부와의 관계는 곧 바로 정치적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한 쌍의 아이디어 없이 민주주의를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통 이들을 분리해서 생각하나 그렇게 하는 것은 혼논의 원천이 될지도 모른다. 이들은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나 실제로 분리해서는 의미있게 취급할 수가 없다. 개인을 위한 자유는 전체 사회의 눈을 통해 볼때 평등이 된다. 평등의 개념에는 획일적 평등(Identical Equality)과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환경과 민주주의에서 어떤 형태의 평등을 강조할 것인가의 문제는 가치 결정의 문제이다.

자유와 평등의 상호 관계는 분명하다. 지위의 분화는 자유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그와 같은 자유의 차등은 역시 불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면 자유도 평등화 된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은 불평등한 능력의 발

30) Giovanni Sartori, "Democracy," in Davi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4(New York: The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1968), pp. 112~121.

휘라는 문제에 부딪힌다. 이때 적용될 비례적 평등은 척도나 기준을 필요로 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기준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획일적 평등이나 비례적 평등은 정의의 의미에 따라야 하며, 모든 면에서 인간 존재의 존엄성이 기본이다. 즉 인간성에는 어떤 등급이나 계급을 허용치 않는다. 정치체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야만 한다. 민주정부는 평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이 원칙을 채택해야 하는 것이다. 평등한 참여란 모든 成人市民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법정에서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³¹⁾

또한 민주주의 철학의 정치적 기초는 권위의 원천으로서 인민의 主權에 있다. 인민의 自由와 平等은 국가의 최고 권력이 그들의 손에 있을 때 보장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개인들이 전체 인민의 이름으로 지배한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적 원리에 따라 정당화 되는가? 그것은 정치권력을 주는데 전통적으로 사용된 개념인 도덕성의 차원의 동화에 있다.³²⁾

(2) J. Roland Pennock :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쌍둥이 이상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훈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주의의 개인주의적 성격은 제 3의 가치인 博愛(Fraternity)를 배태한다. 이때 博愛라는 개념은 합의에 의한 결정이라는 의미에서 강조되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목적은 인간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고, 또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를 평등하게 이룰수 있게 하는데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발전이라는 가치를 내포하게 된다.³³⁾

(3) A.D. Lindsay : 권리의 옹호 뒤에 숨은 원칙은 인간 평등의 원칙이다. 선택과 책임 없이 인간이 될 수 없으므로 권리 없이 인간이 될수 없다. 권리란 자연권이다. 그리고 권리란 自由이다. 현대 민주사회의 원칙

31) Lipson, op. cit., pp. 217~230.

32) Ibid., pp. 237~240.

33) Pennock, op. cit., pp. 3~58.

은 기독교적 평등과 자유이다.³⁴⁾

(4) Martin Diamond : 평등한 정치적 자유로서 自由와 平等은 미국 헌법의 기저를 이루는 이상이다.³⁵⁾

(5) Giovanni Sartori : 민주주의의 유일한 공통 분모인 정통성은 권력이 오로지 인민의 권위로부터 나오고 인민의 동의에 기초한다는 데 있다. 정부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의 기준은 평등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³⁶⁾

(6) Peter H. Merkl : 평등과 참여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전적 개념의 핵심적 아이디어이다. 평등은 어떤 민주주의에서나 선행조건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평등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이다. 이 둘은 서구 세계에서 같이 성장해 왔다.³⁷⁾

이상과 같은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민주주의 가치로서 自由, 平等, 主權在民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치들은 각각 인지적, 情操的, 평가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이 세 개의 가치들이 실제의 수준에서는 각각 별개로 취급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분석의 수준에서는 각각을 분리해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여긴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로 이 세 가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4. 연구의 방법

과학적 연구 방법인 내용 분석 방법은 첫째 체계적이어야 하며, 둘째 객관적이어야 하고, 셋째 계량적일 것을 요구한다.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34) A.D. Lindsay, *The Modern Democratic State*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2), pp. 90~93.

35) Martin Diamond, "The Declaration and the Constitution: Liberty, Democracy and the Founders," in Nathan Glazer and Irving Kristol (eds.), *The American Commonwealth—1976—* (National Affairs Inc., 1976), pp. 39~53.

36) Sartori, op. cit., pp. 112~121.

37) Peter H. Merkl, *Political Continuity and Change*, (Rev. ed.) (New York: Harper & Rows 1972), pp. 82~86.

요구는 (1) 적절한 절차에 따라 표본을 선정해야 하고 (2) 각 항목은 분석에 포함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3) 고려의 대상이 되는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의 배제되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를 위해 조작적 정의와 규칙을 명백히 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내용 분석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과학적 방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요청들을 엄밀하게 따르지 않기로 했다. 즉 내용 분석 방법을 채택하되 계량화하지 않는 질적 분석 방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내용 분석에서 체계적이며 되도록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석의 범주와 분석의 단위를 정하여 분석 절차에 있어 단일한 일련의 지침판을 따르고, 되도록 개인의 주관을 배제하려 노력했다. 다만 분석에서 자료를 계량화하지 않은 이유는 (1) 분석 단위로 삼은 주제가 실제 메시지 구조에서 계량화하기에 알맞지 않으며, (2) 연구의 목적이 시대에 따른 경향(trend)을 보고자 하는데 있지 않고, (3) 민주주의 가치와 다른 여러 가치들(예 권대 권위주의 가치나 혹은 사회주의 가치 등)과의 비교 연구가 아니므로 상대적 평가를 위한 계량화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 규정한 민주주의의 세 가지 가치인 自由, 平等, 主權 在民 등을 분석의 범주로 삼았다. 이들 세개의 범주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들(하위범주)이 포함된다.

(1) 自由(자유권적 기본권)

(가) 신체의 자유

(나) 사회적, 경제적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지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다)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라) 정치적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투표와 선거 운동의 자유

(2) 平等(인간의 존엄·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가) 인간의 존엄

(나) 平等

(3) 主權在民(참정권)

(가) 선거권

(나) 피선거권과 공무 담임권

(다) 국민 투표권(직접 참정권)

(라) 代議制

한편 주제(Theme)를 분석의 단위로 삼았다. 그러나 분석의 단위인 주제를 계산 단위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하나의 문장이나 귀절 혹은 전체 논설에 하나 이상의 가치 주제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독립된 주제로 분석했다.

Ⅲ. 「독립신문」에 나타난 민주주의 가치

1. 自由

가.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권)와 관련하여 「독립신문」은 죄의 유무는 재판정에서 법에 의해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하며, 법에 의해 판결을 받기 전에 죄인 취급을 하여 칼을 씌우는 등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죄형 법정 주의'를 제창한 셈이다.³⁸⁾ 또한 '독립신문'은 상하귀천이

38) 「독립신문」(제 1 권 제 76호), 1896. 9. 29. '논설'.

「독립신문」(제 2 권 제 49호), 1897. 4. 27. '논설' 참조.

누구든지 법사에 잡히거든 재판도 되기전에 벌써 죄인으로 다스려 형벌을 유무 죄를 재판 하기 전에 미리 주어 칼을 쓰인다 착고를 죄인다 못된 음식을 준다 처소가 겨울에는 참고 여름에는 더운게 해야 하니 이거슨 빅성을 사랑 하논거시 아니요 재판이 무어신줄을 모로논거시라 서명 사름이 죄가 있논줄을 재판 하기 전에 알드려도 재판관이 사실 하야 죄가 있다고 선고 하기

나 대소 죄인을 막론하고 재판을 공평하게 해야 하며,³⁹⁾ 연좌제는 폐지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형량은 관대하게 주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⁴⁰⁾

이와 함께 영장 제도의 창설⁴¹⁾, 고문 제도의 폐지⁴²⁾ 재판의 신속한 진

전은 그 사물을 죄인으로 다스리는 거슨 닷당치 안 할지라 재판 하기전에 칼을 쓰인다 착고를 치인다 거쳐 음식을 받서 재판할 죄인과 ㄸ치 호는 거슨 법률 상에 무리할 일이요 만일 형벌을 미리 줄것 ㄸ호면 재판 해야 쓸데 업는 지라 재판 호는 주의는 재판관이 그 사물의 죄가 잇고 업는 거슬 명백히 사실 해야 확실한 증거가 잇스면 그죄에 맛당할 형벌을 법률 칙에 잇는 디로 마련 호자고 재판 이란 거시 심긴 거시라

39) 「독립신문」(제 3권 제 126호), 1898. 8. 29. '법판실수' 참조.

지판 권리는 대소 죄인의게 다 허락 호는 것이 국법에 맛당 호고 인민 생명 재산 보호에 관계가 큰 일이라 김홍륙이라도 지판 업시 류비 되지 아니 호리라 호 옛노라

40) 「독립신문」(제 3권 제 149호), 1898. 9. 27. '협회공문' 참조.

역적 죄인이라도 다시는 로육과 연좌를 쓰지 말고 또 무슴 죄던지 범람히 가두지 말고 법랍히 형벌 호지 말나고 호옵심

성덕이 하눌과 ㄸ치 크시고 어지시거늘 도로 넷 범을 회복 호야 로육 범들과 연좌를 쓰즈고 호옛다니 이는 곳

성상 폐하의 성칙을 억이고 거스림이라.....

무른 누구던지 죄가 잇스면 데호롬에뎀 죄가 잇지 데 쳐즈 권속이야 무슴 죄가 잇단 말이요 우리 나라에서 이전에 육시 쳐참과 연좌 호는 법률을 썼스니 그 쎄에는 역적이 종종 나지 아니 호옛쇼 합경도 빅성들이 만히 아타사로 가고 평안도 빅성들이 만히 청국으로 가고 경상도 빅성들이 만히 일본으로 간 것은 우리 나라 법률이 넘어 육륙 호야 견디지 못호 연고라

41) 「독립신문」(제 3권 제 105호), 1898. 8. 4. '협회에서 돌일'

「독립신문」(제 1권 제 76호), 1896. 9. 29. '논설' 참조.

치저는 정부에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당호 일은 어디 사지던지 보호 호 일 들지는 무단히 사람을 잡거나 구류 호지 못 호며 잡으랴면 그 사람 죄목을 분명히 공문에 써서 그 사물의게 비이고 라치 호 일 셋저는 잡은 후에 도 재판 호야 죄상이 현로 호기 전에는 죄인으로 다스리지 못호일 넷저는 잡힌 후에 가량 이십 스시년에 법판의게로 넘겨서 재판을 청호 일 다섯저는 누구던지 잡히면 그 당자나 그 당가의 친척이나 친구가 육시 법판의게 말 호야 재판을 청 호 일 몇 가지던지 육그와 방문호 도약을 명 호야 스갈 이왕으로 논 정부 관원들이 감히 억이지 못 호게 호옛스면 무단히 죄도 물으고 잡혀서 몇덜 몇 헌식 사롬 업시 육중에서 세월을 보느 논 폐단은 업슬지니

42) 「독립신문」(제 1권 제 61호), 1896. 8. 25. '논설'

「독립신문」(제 1권 제 49호), 1897. 4. 27. '논설'

만일 죄인이 죄가 잇스면 법률디로 다스려 육을 죄가 잇서 당장 죽이논 거슨 가커니와 사람을 살너 노코 이 악형을 호야 산 사람의 다리에 쎄가 드러 나도록 쎄리고 또그리케 죽게 된 사람을 또 더 쎄리량으로 잡아 오라 호는거

행과 공개 재판⁴³⁾ 증거에 의한 판결⁴⁴⁾, 그리고 피의자가 재판에 의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석방될 때에는 이에 대한 보상제도를 둘 것 등을 주장했다.⁴⁵⁾

나. 정신적 자유

정신적 자유(권) 가운데서 「독립신문」에 반영된 것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유일하다. 즉 「독립신문」은 언론의 자유와 함께 신문의 기능에 대해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교육적(제몽적) 기능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으며, 신문의 여론 형성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민의 의견을 공평하게 대변할 것과 비판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부정 부패와 탐관오리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 정부의 잘못된 일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보도의 기능, 비판의 기능, 제몽적 기능 등을 신문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⁴⁶⁾

손 사람의 마음 가진 사람은 몸에 소렴이 세칠지라 이리케 마진 사람의 성명은 정경호라 하는 사람인데 죄인즉 그의 선산에 었더훈 사람이 두장 혼질 굴 총훈 죄요 저금 이리케 새린거슨 말이 이왕에 이 사람이 비도라고 그리 혼다 니 이 일에 죄국은 우리가 도모지 모로거니와 만일 죄가 잇스면 그 죄더로 증역을 식힌다던지 죽인다던지 하는진 가커니와 산 사람을 이리케 악형을 하야 외국 사람들이 이걸 불상히 녀혀 그의 약으로 와서 구완 하여 주니 남의 나라 사람은 조선 사람을 불상히 녀혀 놀마다 와서 병을 갖쳐 주되 정부에 관인은 그의 나라 사람을 이리케 악독히 가죽을 벗기니 이런 몸쓸 일 하는 사람들이야 었지 평성을 편안이 기내며 죽은 후라도 었지 이런 양화를 밧지 아니 하리요 법부에서 이 일을 자서히 스실 하야 만일 증거를 좃고 심거던 신문사료 괴빈 하던 외국 사람 셋과 기의 조선 사람들이 가서 재판소에서 본더로 증거를 덜터이니 법부에서 이 일을 스실츄미 지무를 한노것 훗터 일너리

「독립신문」(제 2 권 제 49호), 같은 글.

「독립신문」(제 3 권 제 148호), 1896. 9. 29. '중추원 청정소'

「독립신문」(제 3 권 제 149호), 같은 글.

「독립신문」(제 3 권 제 158호) '1898. 10. 7. '만국공문' 참조.

43) 「독립신문」(제 3 권 제 105호), 같은 글.

44) 「독립신문」(제 1 권 제 76호), 같은 글.

45) 「독립신문」(제 3 권 제 148호), 같은 글.

46) 「독립신문」(제 1 권 제 1호), 1896. 4. 7. '논설'

「독립신문」(제 2 권 제 89호), 1897. 7. 29. '론설'

한편 「독립신문」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장려되던 공개토론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민권이 신장되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생각이 보급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주장했다.⁴⁷⁾

다. 정치적 자유

「독립신문」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등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함께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양당제도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정당결성의 자유와 그것의 장려를 주장하는 까닭은 공개정당의 형성에 의한 여론정치의 실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

「독립신문」(제 2 권 제 96호), 1897. 8. 14. '론설'

「독립신문」(제 3 권 제 23호), 1898. 2. 24. '독립협회 상소소본'

「독립신문」(제 3 권 제 163호), 1898. 11. 7. '반당의 공력'

혹은 빙성이 정부에 반대 하는것을 이상히 녀이나 반대가 없으면 진보가 없나니 서가 풍중에 나는 것을 보면 그 날키가 공기를 쳐서 그 공기가 그 날키를 반대 하는 고로 점점 높히 올고 비가 물에 형 하는것을 보면 노 절제다 다 물이 반대 하여 비가 압호로 나가니 정치에도 반덕당 있어서 대소사를 슬피고 시비 하여야 점점 정치가 밝나 가니 반당의 공력이 이와 같을지라 대한 빙성들도 이 리치를 시나라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자별히 주의 하여 어느 색던지 잘못 하는 일이 있으면 쓰리지 말고 시비 하며 반대 하여 정부로 하여금 방심 하는 폐단이 없게 할지어다

「독립신문」(제 4 권 제 5호), 1899. 1. 10. '언권자유'

말 하는것이 사람의 특별한 권리라 말이 없으면 권리의 오묘 함을 궁구 함수 업고 오문의 도리를 끝으칠수 업술티이라 하늘이 만민을 내히실 때에 부귀 영욕을 다 주지 아니 하였스나 말 하는 지조는 다 주셨스니 부귀 영욕은 천성 권리라 하지 못 하되 언권자유(言權自由)는 천성 권리라 하늘이 주신 권리를 잊지 진중히 보존치 아니 하리요

어느 정부든지 그 인민의 심명과 재산과 권리를 보호 함이 가장 큰 직분이요 또 언권 자유 하는 권리를 업시 하면 공론이 업서지고 공론이 업서지면 정부 관인들이 괴탄이 업시 인민을 압제 하여 국가가 위태 하게 되느니라

「독립신문」(제 2 권 제 119호), 1897. 10. 7. '론설'

「독립신문」(제 2 권 제 150호), 1897. 12. 18. '론설'

「독립신문」(제 3 권 제 43호), 1898. 4. 12. '론설'

「독립신문」(제 3 권 제 97호), 1897. 7. 26. '신문 모로논 빙성'

「독립신문」(제 3 권 제 131호), 1897. 9. 5. '신문잡의론'

「독립신문」(제 3 권 제 118호), 1897. 10. 5. '론설' 참조.

47) 「독립신문」(제 3 권 제 21호), 1898. 2. 19. '광무협회연설'

「독립신문」(제 2 권 제 144호), 1897. 12. 4. '론설' 참조.

문이다.⁴⁸⁾

라. 사회적 경제적 자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자유 가운데서 '독립신문'은 재산권의 보장(자유)을 강조하고 있다. 재산권은 누구나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며, 따라서 정부는 마땅히 백성의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재산권의 보호는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재산을 갈취하고 벼슬아치들이 백성

48) 「독립신문」(제1권 제68호, 63호, 64호), 1896. 8. 27, 29 및 9. 1. '론설' 참조
 나라마다 당이 있어서 서로 불히고 서로 시비하야 피차에 혼 일을 서로 평는 하는 사물에 나라 일이 늘 그릇 되거 앉는거시 서명 할당이 권이 있어서 명부를 차지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을 하고스며 다른 당이 그 그릇 하는 일을 시비 하고 편하가 모도 알게 신문에 기록 하는 사물에 같이 그런 일을 하고 스퍼도 못 하는지라 명치 당이 생기면 그당에서 그당 본의와 방침을 그당에 속한 사물들이 모혀 작정 하야 전국 인민에게 알게 하되 만일 우리 당이 권이 있어서 명부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라와 백성을 위 하야 무슨 일들을 하겠노라고 미리 광고를 하야 본국 인민과 외국 사물들이 그당이 권이 잇스면 무슨 일을 할줄을 미리 알고 안것는지라 그런고로 그당이 명부를 맞하 가지고 일을 하면 그정히 노론 약조와 대처 일을 하지 안 하역서는 못할지라 조선 명치당들은 그당에 본의와 백성들이 모로노고로 이당이냐 며당이냐 다만 백성들이 의심한 하고 모도 명부에 벼슬 하는 사물은 백성들이 원슈 대처 아노고로 의면으로 보기에 명부 안에 당조에 당이 업는것 모호되 실상인즉 당이 아조 잇서 서로 식기 하며 뒤워 하고 서로 험롭게 하랴고만 하니 그중에 혹 나라 일을 위 하야 남과 시비 하는 사물도 잇거니와 의면으로 보면 그사물들이 모도 권리를 다루는것 모호지라 서명 그당이 들어 서 드리도 그반더 당의 하던 일에서 더 낮게 하는것도 업고 더 따르게 하는것도 업는지라 그러 할즉 백성들 생각에는 이당이냐 며당이냐 일하는디는 다름이 업고 다만 벼슬을 취하야 싸움 하는것 모호지라 의면으로 당이 업다고 하되 속으로 는 당이 아조 잇스니 우리 생각에는 명치 당이라 하는거슨 사사를 위하야 성진당이 아니라 들이 다한

남군과 혼 백성을 위하 심진 당들이니 당에 본의와 방침을 은근이 남 모르게 하잘 묘리가 잇서리요 만일 그본의와 취방이 리치가 잇고 맛당 하고 경다오면 사물이 만히 알쇼록 그당에 유조 할지라 무슨 일이던지 남 모르게 하라는 거슨 그 근본이 우부러졌기에 부그러워서 남의게 알니지 못 할지신줄노 우리는 생각 하노라 만일 사물 백명이 모혀 나라 일을 의면 하면 백명이 다한 남군과 혼 백성을 위 하하는 생각은 모호되 잇더케 하하야 그 남군과 그 백성이 매일 편 하고 매일 부잡할 방침인즉 백명이 다 대처 생각 함 수가 업는 고로 그중에 몇촌 이러케 하야 나라에 유조 할줄노 생각 하고 그남저지 몇촌 더러케 하야 더 유조 할줄노 생각 하야 의면이 달나지고 의면 모호 사물들 썬리 모혀야 당이 되느니라

을 착취하는 현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논조를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⁴⁹⁾

또한 재산권의 보호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등의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⁰⁾

2. 平 等

가.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는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혹은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로 보는 획일적 평등주의 등을 통해 잠재적으로 강조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로 보는 관

49) 「독립신문」(제 1 권 제 104호), 1896. 12. 3. '론설'
「독립신문」(제 4 권 제 186호), 1899. 8. 15. '법서가 황서거름'

「독립신문」(제 2 권 제 7호), 1897. 1. 19. '론설'

「독립신문」(제 1 권 제 106호), 1896. 12. 8. '론설'

「독립신문」(제 2 권 제 21호), 1897. 2. 20. '론설'

「독립신문」(제 2 권 제 28호), 1897. 2. 28. '론설'

「독립신문」(제 2 권 제 68호), 1897. 6. 10. '론설'

「독립신문」(제 2 권 제 95호), 1897. 8. 12. '론설'

「첫지는 내 재산과 내 인명을 익히고 풀지는 나나를 위 하여 국중에 이런 무법한 일이 업도록 준비 하논것이 빙성의 직무라 빙성이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서 일심이 되어 사람마다 내 재산과 인명을 보호 하려 할진대 나라에 분란한 일이 업도록 하여야 할것이요 나라에 란이 입게 하려 하거드면 나라에 못된 일하고십혀 하는 사람들이 못된 일을 못 하도록 하여야 할터이라」 이것 막기는 어렵지 아니 할것이 맞지론 아니 하였시면 못 할지라 맞지 안키가 조금 조선 사람의 생각에는 어려울듯 하나 그 어려운것은 다름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은 고단한 자들이요 고단한 자들은 인민들이 일심이 못된 자들이요 일심이 못된 자들은 학문이 업서 일심이 아니 되면 구습 취가 즈귀의 몸에 있는 자들을 모로논 자들이라 만일 어느 고을이던지 그 고을원이 그 고을 안에 사는 빙성 하나를 구리 한매 얼거 형벌을 한던지 돈을 세스려 하거던 그 일을 그 고을 인민들이 그 사람 혼즈 당한 일노 알지를 말고 온 고을에 있는 남 녀老少가 다 당할것을 생각 하여 일심으로 원의게 가서 원이 무법 하게 할 말을 공손 하게 경비에 못당 하게 도리에 셋섯 하게 말 하거드면 그 원이 양민 못된 사람이라도 감히 다시는 무법한 일을 그 고을 안에서 잡이나 못 할지라」

「독립신문」(제 3 권 제 105호), 1898. 8. 4. '협회에서 할 일' 참조.

50) 「독립신문」(제 3 권 제 32호), 1898. 3. 17. '론설'

「독립신문」(제 3 권 제 42호), 1898. 4. 9. '론설' 참조.

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독립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나. 평 등

「독립신문」에 나타난 평등의 가치는 (1) 신분의 평등 (2) 남녀의 평등 (3) 사회적 평등의 세가지 하위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립신문」은 무엇보다도 신분상의 평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신분상의 평등과 관련하여 평등이 하늘이 준 권리로 보고 반상제도의 철폐, 노비제도의 철폐와 신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독립신문’은 획일적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에 따른 선택의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비례적 평등의 개념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⁵¹⁾ 또한 ‘독립신문’은

51) 「독립신문」(제 3 권 제 30호), 1898. 3. 12. ‘평안북도……’

「독립신문」(제 3 권 제 38호), 1898. 3. 31. ‘독립협회 회원 윤 기진씨……’

「독립신문」(제 2 권 제 123호), 1897. 10. 16. ‘론설’

하느님께서 내신 사물이어늘 엇지 사물이 사물을 사물으로 대접치 안코 증승과 궤차대접 해야 사다가 불일 도리가 잇스리요 이런 풍속이 우리 나라에 잇고는 턴복을 받기논 시로히 반다시 턴벌을 면치 못하겠스나 괴어히 이 풍속을 업세야 사물 된 죽분을 하겠다 하고외리를 목숨과 지산보다 더 중히 녀이고 나서서 남방과 여러해 동안을 싸화 괴어히 남방을 익이고 그 중들을 다속속 하여 주었는지라 마돈 이 일뿐 아니요 이 나라에서 외리로 주장을 숨고 덩치 상과 권리 상에 모든 일들을 턴리와 인정에 합당하게 돈든 풍속과 소업이 만흔 코로 턴복을 받아 지금이 나라가 부 하기도 세계에 제일이요 화명복을 누리기도 세계에 제일이다 이 나라 사물들이 그 중들 속향 할것은 남을 사물으로 대접하여야 나도 남에게 사물으로 대접을 받겠스니 그 그 사물들을 넉넉히 잡아다가 부릴 계제가 잇슬지라도 그 사물의 사물 된 권리를 써앗지 안코 사물은 사물을 동등으로 대접하자는 말이로더 그대 미국에서 중 노릇 하던 사물들이 저기 나라 사물들도 아닐 썬더러 인종도 다른 인종이로더 이 렇게 대접을 하엿거늘 엇지 우리 대한민국 사물들은 할 턴조 밋혀서 빅성 노릇 하는 동포 형제들이 혹 세력이니 지산이 세력잇다고 잔악한 형제를 불상허 녀이고 구제 하여 할 심각은 아니 하고도로혀 그 빈약한 형제를 키와 도야지 궤차 돈뿐 주고 문서 하여 사다가 두고 팔진 모양으로 부리며 또 술들을 시집 보낸다 하고 몇 빅탕 몇 천량식들 받고 팔아 먹으니 이런 풍속들은 다 턴리와 인정에 합당치 아니 할 풍속들이라 형실이 착한 사물은 내가 세력과 지산이 남보다 만트리도 나의 세력으로 남의 권리를 무

남녀 평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남녀 평등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억압적 구조—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을 천하게 여기는 폐습, 축첩, 불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⁵²⁾

리 하게 세았지도 아니 홀 뿐더러 간난 하고 약한 사롬을 아모조륙 구제 하 여 주며 설명 내가 간난 하드리도 나의 간난 홀것으로 남을 방허롭게 아니 하거늘 엇지 내가 세력과 재산이 좀 있다고 남의 텃심 권리를 세았으며 내가 좀 간난 하다고 지식을 팔아 먹는 무도홀 인종이 어더 잇스리요 세상 물건을 다 사롬이 팔고 사고홀 권리가 잇스되 사롬이 사롬을 사고 팔고 홀 권리는 업논것은 천홀 사롬이나 귀홀 사롬이나 하느님피쳐 맞은 사롬의 권리는 다 홀 사롬이라」

「독립신문」(제 2 권 제 63호), 1897. 5. 29. '론설'

「독립신문」(제 1 권 제 112호), 1896. 12. 22. '론설'

「독립신문」(제 3 권 제 144호), 1898. 9. 21. '유지각홀 친구의 글'

「독립신문」(제 3 권 제 165호), 1898. 10. 15. '개탄론' 참조.

52) 「독립신문」(제 1 권 제 7호), 1896. 4. 21. '론설'

세상에 불상홀 인성은 조선 녀편네내 우리가 오늘날 이불상홀 녀편네들을 위 하야 조선 인민의게 말하노라 녀편네가 사나회 보다 조곰도 나진 인성이 아닌더 사나회들이 천더하논거슨 다름이 아니라 사나회들이 문명 기화가 못 되 야 리치와 인정은 성각지 안코 다만 조그외 팔심만 밋고 압제하랴논거시니 엇지 야만에서 다름이 잇스리요 사롬이 야만과 다른거슨 경의와 폐법과 의리를 알아 형신을 하논거시어늘 조선 사나회가 녀편네 더점하논거술 보거드면 경도업고 의도업고 레도업고 춤 사랑하논 마음도 업시 더점하거를 사나회 보다 천홀 사롬으로써고 무리하게 압제하논 풍속과 억지와 위엄으로 험하논 일이 만히 잇스니 그 녀편네들을 더하야 엇지 불상하고 분홀 마음이 업스리요. 장 부라 하논거슨 강하고 교만홀 사롬을 업수히 녀이고 약하고 곤홀 인심을 눌 히고 위헌 주는 법인더 녀편네논거슨 사나회 보다 약하니 장부의 도리에 약 홀이를 존경하고 위하논 거시 높고 맛당홀 일이라 조선 녀편네들이 홀한고로 조유홀 권이 업서졌고 더점받거를 욕에 갖친 썩이니 조지 하니 그 사나회들의 무리홀 죄상을 생각하거를 뒤우 천하고 패설하더리 조선 남녀의 형실을 비교하 여 볼진더 녀편네가 사나회 보다 빅빈이 나흔거시 첫지는 사나회중에 음험하 논 자이 더 만코 첩 든 사롬이 만히잇시되 녀편네 중에는 음험하논이도 적고 간부 든 녀편네도 적은즉 엇지 사나회 보다 높고 정결치 안하리요 무리홀 사 나회들이 풍속 문물거를 더하논 음험하며 장가든후 첩을 두어도 붓그럼이 업 고 조그 안하논 음험이 잇는지 간부가 잇스면 때변으로 아니 그런 교로지 못 할 일이 엇지 잇스리요 조그 형실이 울코 정결홀 후 조그 안하거 형실이 그 르면 그색은 그안하를 쫓는다든지 법률도 다스리논거슨 맛당하거시와 조그 형실이 그른즉 조그 안하 최망 하논 권력이 업논지라 조선 사나회 중에 음험

한편 사회적 평등에 대해서는 거의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평등한 조세 부담을 강조하고 공평하게 편이 시설을 이용할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⁵³⁾

3. 主權在民(참정권)

「독립신문」은 인민이 나라의 근본이고 주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권력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장하는 국민 주권론을 펴고 있다. “나라라 하는 것은 크던지 작던지 한 지면에 여러 사람이 모여 살면서 여러 사람들이 정부가 없이 살수 없는 고로 정부를 배설하고 정부와 백성을 거느리는 직무는 임금께 드려 임금을 머리삼아 가지고…… 모두 합심하여 작정하기를 정부가 없으면 우리 혼자 살수가 없는 고로 우리가 아무쪼록 정부를 보호하고 정부와 우리를 모두 거느린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 그 임금과 그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공평히 해야 한다고 보았다.⁵⁴⁾ 이 글을 보면 主權在民의 사상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수

을 알든지 점을 두는 자는 음행 있는 녀편네 다스리는 법률노 다스리는거시 맛당하니라 조선 천하 사나회 생각에 조끼 안히가 못 밋어워 문밖의 임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너의하는 풍속을 마련하야 죄인갓치 집에 가두어 두고 부리기를 중 갓치하고 천덕하기를 조끼 보다 나진 사뭇으로 녀이니 엇지 분치 아니하리요 안히가 죽으면 후취 하는거슨 더회들이 울혼 법으로 작정하였고 서방이 죽으면 리가 하여 가는거슨 천히 녀이니 그거슨 부슴의린지 물을 너라 가논할 녀편네가 쇼년에 과부가 되면 리가 하여도 무방하고 사나회도 쇼년에 상쳐하면 후취 하는거시 맛당 하니라 조선 부인네들도 초초 학문이 높하지고 지식이 널저지면 부인의 권리가 사나회 권리와 갓할줄을 알고 무리호 사나회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니라 그러키에 우리는 부인네들의 권호노니아모쪼록 학문을 늘히리화 사나회들 보다 힘실도 더 높고 지식도 더 널져 부인의 권리를 찾고 어리석고 무리호 사나회들을 교혹하기를 바라노라

「독립신문」(제 3권 제 1호), 1898. 1. 4. ‘론설’

「독립신문」(제 3권 제 205호), 1898. 12. 2. ‘상복저 문답’

「독립신문」(제 3권 제 18호), 1898. 2. 12. ‘론설’ 참조.

53) 「독립신문」(제 1권 제 28호), 1896. 6. 9. ‘론설’ 참조.

54) 「독립신문」(제 2권 제 45호), 1897. 4. 17. ‘론설’ 참조.

나라라 하는거슨 크던지 작던지 한 지면에 여러 사람이 모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이 정부가 없이 살수가 없는 고로 정부를 배설 하고 정부와 백성을 모두 거느리는 직무는 님군의 덕덕님군을 머리를 삼아 가지고 백성들이 강하고 악

있다. 비록 군주제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군주제 자체도 그 권력이 군주로부터 나온다기 보다 인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인민이 만든 정부이므로 인민이 정부를 보호해야 하고, 정부는 인민을 위한 정부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主權在民 사상은 인민이 주인이고 주권이 인민에게 있으므로 인민은 주인 행사를 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탐관오리나 인민을 압제하는 관리는 심부름을 잘못된 관리이니 그들을 성토하여 파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또한 뒷받침 되고 있다.⁵⁵⁾ 그리고 「독립신문」은 관리가 ‘백성의

하고 병 들고 성 하고 부즈롭고 간난 하고 늙고 곁고 사나회고 녀편비고 모도 합심 하여 작정하기를 우리 혼조 정부가 업스면 살수가 업는 고로 우리가 아모조록 정부를 보호 하고 정부와 우리를 모도 거나린 님군을 충성으로 섬겨 그님군과 그 정부가 우리를 도아 주고 우리를 위하야 공평호 법률을 마련 하고 군사를 길너 외국이 침범치 못 하게 하며 순검을 빅셀 하야 도적을 금 하며 위성에 관계 되는 일을 살피여 외국과 교제 하야 외국 빅성들과 동상 하야 국중에 상부가 느러 가게 하며 우리 중에 시비가 심기거든 법관의 게 가서 말 하거거든 그 법관이 공평 정즉 하게 시비를 결정 하여 주게 하며 이 일을 모도 하자니 사 불가불 경비가 잇서야 할지라 그런 고로 우리 빅성들이 일년에 얼마큼씩 조그형세더로 돈을 출렴 하야 그 정부에 보내여 그 정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일하여 주는 각직 관원과 순검과 군수들을 월급을 주어 그 사람들은 다른 성이 할 틀이 업스즉 이 월급을 먹고 우리 일을 하여 돌아는 뜻으로 출렴을 내는더 고르게 낼수가 업스니 사 디세라는거슬 먼드러 상만히 버는 사들은 세를 만히 내게 하고 쌍적은 사들은 세를 적게 내게 하며 장사 하는 사들은 자본 다쇼를 인연 하야 세를 물게 하는거시라 그 러 한즉 당초에 나라 심긴 본의는 여러 사들이 외몬들 하야 전국에 잇는 인민을 위 하야 각직 일을 마련 할거시요 각직 관원도 빅성을 위 하야 돈을 거시며 빅성이 정부에 세받치는 것도 빅성들이 조그 일을 위 하야 받치는거시라 그 러 한즉 나라 흥망과 성쇠와 법률에 공평 하고 공평치 아니 할것과 관인의 선불선과 군수의 용립 잇고 업는것과 순검의 경찰 잘 하고 잘 못 하는 것과 외국과 교제 잘 하고 잘 못 하는 것과 농무와 공무와 상무와 각직 인민의 지식 이 느러 가고 아니 느러 가는거시 모도 빅성의 걱정이요 빅성의게 관계가 잇는거시라

55) 「독립신문」(제 1 권 제 97 호), 1896. 11. 17. '론설'

「독립신문」(제 3 권 제 97 호), 1898. 1. 11. '론설'

나라이 흥 하고 망하는것은 그 나라 빅성들이 빅성의 직무를 하고 아니 하는 데 잇는것이라 빅성의 직무는 다른것이 아니라 매일 정부가 위군 인민 하는 정부인지 아닌지 그것을 볼켜서 만일 정부에서 하는 일이 유회로는 님군을 존경 하고 아리로운 빅성을 사랑 하야 사롭다다 성인이 있고 직업이 잇서 안

중'이라는 점을 누누히 설파함으로서 主權在民 사상을 강조했다. 이상과 같은 主權在民사상을 기초로 「독립신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공무담임권) 대의제를 주장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독립신문」은 나라의 대신들은 임금이 임명하되 관찰사나 군수등 지방

락 하게 살도록 법률과 규칙을 함들며 그런 법률과 규칙을 만든디로 추호라도 억인 업시 시험 함것을 슬퍼야 함며 맞기로는 외국과 교체를 잘 하여 통상 제국들과 친밀하게 지녀 상당할 대접과 신의를 뜻함게 함것이 인군 인민 함는 정부라 그런 정부에서 함는 명령은 조곰치도 억인 업시 시험 함것이 빅성의 직무요 만일 빅성들이 알기에 정부가 인군 인민 함는 스업을 못 할 디경이면 그 쇼이연을 법률에 맞함게 말 함야 아모조독 인군 인민 함는 정부가 서도록 함것이 빅성의 직무라 그런 연고로 세계 자국 빅성들은 다 즈기의 직무들을 함야 정부가 다 바르고 법률과 규칙이 시험이 되야 나라이 점점 부강 함여가며 인민의 의식과 직업이 너너 함야 가거니와 청국은 인민들이 빅성의 직무를 못 함는 고로 오늘날 분파가 되야 가니 그 외에 더 확실 할 증거가 어더 잇시리요 청국은 디면이 광대 함고 인구가 만히 잇서 세계에 일 대국이어늘 만일 인민이 인민의 직분을 할것 ㅈ하면 그 나라이 오늘날 세계에 매일 가는 나라이 될터이나 빅성들이 당초에 정부가 올코 그른것도 상관 아니 함고 정부가 늘니 빅성의게 학정을 함며 전국 주슈 독립 권리를 남의 나라에 주며 토디를 외국으로 모도 선물 함되빅성들은 조곰치도 상관 아니 함고물그럼히 보고 잇시며 설명 정부에서 조흔 법률을 마련함여도 빅성들이 그 법률을 시험 할 생각도 아니 함며 정부를 더의 정부로 데이지 아니 함고 남의 일도 보고 잇시니 암몬나라이 크고 인구가 만트러도 그 빅성들이 빅성의 직무를 아니 할담에야 몇 배가 더 잇서도 할디가 업논지라 빅성의 직무가 다몬 안저 정부를 시비 함논디 근치논 것이 아니라 만일 정부에서 나라에 히로운 일을 함저드면 거어히 그런 일을 못함도록 함것이 빅성의 직분이요 쏘 정부에서 인군 인민 함야 모든 법령을 할코ㅈ치 시험 함것이 직분이요 쏘 나몬 올흔 빅성이 될뿐이 아니라 전국 인민이 다 나와 ㅈ치 올흔 빅성이 되도록 권면 함는 것이 쏘할 직분이니 청국 빅성은 이 세가지를 다 못 함는 빅성인즉 엇지 그 나라이 오늘날 당 함는 육을 면 함리요 지국 청국 스세가 대단히 적은 함야 동양 제국들이 청국을 위 함야 한탄 할뿐 할지라 대한 인민은 목적에 이런 증거가 잇시니 더욱 더 생각 함야 사뭇디다 이 세 가지 직무를 함야야 대한이 주슈 독립국으로 지칭을 함지 만일 청국 빅성 모양으로 안저 정부만 남으라고 즈기 직무들은 아니 할것 ㅈ하면 정부에는 암몬 유명 할 대신들이 잇서도 나라 일을 못 할터이니 이걸 생각 함야 경향 간에 나라이 지칭 함기를 볼오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직무를 함야야 할터이니라 「독립신문」(제 2 권 제52호), 1897. 5. 4. '내부에서……' 「독립신문」(제 3 권 제191호, 192호), 1898. 11. 16~17. '채순씨 편지' 「독립신문」(제 2 권 제 6 호), 1897. 1. 16. '론설' 참조.

관서의 장은 백성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들이 지방 관서의 장을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할 까닭을 「독립신문」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로 들고 있다.⁵⁶⁾ (1) 투표로 선출된 지방 관서의 장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 것이므로 인민의 원망이 없을 터이고 (2) 유능하고 양심적인 인물이 뽑힐 것이며 (3) 지방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좋은 행정을 펼 수 있고 (4) 자기를 뽑아준 백성들을 위할 것이며 (5) 인민의 신임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에 더욱 힘쓰게 되어 나라와 백성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지방 관서의 장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선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이면 누구

56) 「독립신문」(제 1 권 제 4 호), 1896. 4. 14. '론설'

「사물끝은 법이 대단히 어려운 거시니 한사람이 천하는 사물은 암만하여도 밋기가 어려운거시 그천거하는 사물이 천거할세는 그사물이 울키에 천거할 거시려니와 만일 잘못 알았스면 국가에 큰 낭패에 천주의게 불행할 일이니 그런 중환 일은 누가 담당하기를 그리 조하하리오 만일 몸 조심하는 사물은 이런 일을 조하 아니할듯하더라 이런 사닥으로 의국서는 관찰스와 원주은 것과 정부속에 잇는 관원들을 빅성을 식여 썩게하니 셔령 그 관원들이 잘못 하드라도 빅성들이 남군을 원망아니하고 조기가 조기를 꾸지고 그런 사물은 다시 투표하야 미관 말직도 식이지 아니하니 벌을 정부에서 주기전에 빅성이 그사물을 망신을 식이니 그관원이 정부에서 벌주는것 보다 더 두렵게 녀일터이요 또 청하여 싸질 도리도 업실 터이라 너각 대신과 협관은 남군이 친히 쏘부시는거시 맛당하고 의입은 그도와 그골 빅성으로 식여 인망잇는 사물들을 투표하야 그중에 표 만히박은이를 쏘바 관찰스와 군수들을 식이거드면 빅성이 정부를 원망함이 업실거시오 또 그러케 쏘본 사물들이 셔울셔 하거나 두사물의 천거로 식인 사물보다 일을 낮게홀터이요 그사물이 그도나 그군에 산사물인즉 거기일을 셔울셔 가는 사물보다 자셰히 알터이요 거기 빅성들 사 달게 원이든지 관찰스를 하엿스니 그사물이 그빅성들을 위할 생각이 더 잇스리라 정부에 관인인관저슨 남군의 신하요 빅성의 중이니 우피로 남군을 섬기고 아락로는 빅성을 섬기는 거시라 나라 규도가 이러케 되면 남군의 권력이 높아지고 빅성의 형세가 편홀터이니 국중에 무슴 법이 잇스며 원망과 불평호 소리가 잇지 잇스리요 우리가 바라전던 정부에 제신 이들은 몸 조심도 하고 나라가 되기도 바라거든 관찰스와 군수들을 조기들이 천거 말고 자지방 인민으로 하하끔 그지방에 썩게하면 국민간에 유익할 일이 잇는 거술 불과 일이 년 동안이면 가히 알리라

「독립신문」(제 1 권 제 5 호), 1896. 4. 16. '론설'

「독립신문」(제 2 권 제 6 호), 1897. 1. 16. '론설' 참조.

나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

나. 대외제

「독립신문」은 1898년 4월 30일자 “론설”을 통해 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1898년 7월 27일자 ‘하의원은 급치 안타’는 논설을 통해 중추원을 상원으로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하원의 구성은 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독립신문’의 주장은 물론 당시의 독립협회의 정치적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898년 4월 30일자 “론설”의 내용은 여기 다시 요약하지 않고 중요부분 그대로를 자료에 실기로 한다.⁵⁷⁾

57) 「독립신문」(제 3편 제 51호), 1898. 4. 30. ‘론설’

그런 고로 대한도 초초 일당 규모를 정부에 세외이 혼잡 하고 규칙 업는 일 업세라면 불가불 의정원이 따로 잇서 국중에 그중 학문 잇고 지혜 잇고 조흔 생각 잇는 사람들을 뽑아 그 사람들을 형정 하는 권리는 주지 말고 의론 하여 작당 하는 권리든 주어 조흔 생각과 조흔 의론을 놀다다 공평 하게 토론 하여 리히 손익을 공변되게 토론 하여 작당 하여

대황제 폐하의 이 여러 사람의 토론 하여 작당할 뜻을 풀 하여 지가를 무른 후에는 그 일을 니각으로 넘겨 니각서 그 작당할 의사를 가지고 규칙대로 시험문 훑것 ㅈ하면 두가지 일이 전유히 되고 니각 안에 분잡할 일이 업슬터이라 또 이렛게 일을 하거드면 다만 일선 을게 될뿐이 아니라 대황제 폐하의 리우 편리할 경계가 만히 잇슬것라.....

만일 형정 하는 일 외에 의정 하는 일 까지 못하 낫커드면 그 대신이 세상에 업는 총명과 지통이 잇드릭도 두 가지 일을 다 번번히 을케 할수가 업는지라 만일 학문 잇고 지혜 잇는 사람이 여럿이 모혀 공평하게 토론 하여 작당할 일 일것 ㅈ하면 조그 혼조 생각 하여 작당 할 일 보다 마음으로 더 튼튼 할터이요 일이 더 바르게 작당이 되엇슬터이라 이렛게 작당 할 노흔 일을 지통을 가지고 못당 하게 시험문 훑것 ㅈ하면 위선 일이 랑피도 아니 되려니와 틀이 잇서 형정 하는터 전력을 하게 될지라 인민의게는 한량 업시 유효 할 일이 만히 잇슬것은 무엇인고 하니 무론 무삼 일이요 좌우편이 잇는즉 좌우편 일을 의정원에서 공변되히 토론 하여 정부에서 좌우편 사정을 다 참작후 뒤에 작당이 되엇는즉 좌우편이 다 그일 사됨에 힘을 당 할리가 업고 또 절형 힘을 당 하는 사람이 잇드릭도 못이 못 될터이요 그 사됨에 국중에 리 보는 사람은 몇백만명이 될터이며 또 정부에서 무삼 주견으로 무삼 리히를 헤아려 그 일을 그렛게 작당 할줄을 사람마다 알터인즉 위선사람이 세상에 좌우편 시비와 리히와 선불선을 좌우편 말을 다 뜻고 분기가 나서서 뽉히 경계 잇고 쪽쪽 하게 말을 할터이니 병신노릇도 아니고 려니와 매일 사람마다 정부 일에 마음으로 더 친밀히 되야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내 일과 ㅈ치 생각하고 정부와 백성 사이에 업던 경분이 날터이며 나라 사랑 하는 마음이 이왕 보다 배가

IV. 결 론

李萬甲 教授의 논문 “독립신문에 표시된 가치 관념”에 따르면 표본으로 뽑힌 154 편의 논설 중에서 목표로서 강조된 가치로서 忠君, 애국에 해당 되는 것이 51 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학문, 합리가 29 회, 민주, 평등 22 회, 생활태도 22 회, 진보 17 회, 준법, 공정 14 회, 외세경제 13 회, 기타 1 회로 나타나 있다.⁵⁸⁾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독립신문」이 민주주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 李 教授는 비록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존중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역시 그에 앞서 민족이 더 중요시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잘 살게 되어 국가가 튼튼하게 되도록 하는 길이 곧 충군하는 길이라는 것이 「독립신문」의 논설에 흐르고 있는 기본 사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독립신문」의 논설을 보면 임금과 백성과 나라를 하나로 보고 있음이 명백히 들어난다. 이 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겠으나 군주 국가라는 당시의 정치체제를 감안해 볼때 그러한 인식은 백성을 군주의 신민으로 보기보다 동등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主權在民의 사상이 그 근거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군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불가피했었다는 전제를 인정하고 「독립신문」에 반영된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때 「독립신문」이 강조한 민주주의 가치들은 자명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또한 전제해야 되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 가치를 주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 당시

더 홀터이며 내가 원통 하고 내가 속에 있는 마음을 사람마다 통히 정부에 말 해야 좌우 간에 공평 되게 결정할 길이 성길지라 그리고 본즉 의정관과 형정관의 직분을 이렇듯 분간 해야 늦커드면 즈연히 일이 잘 될터이니 위선 건국에 유조도 할려니와

58) 「韓佑肋 博士 停年紀念 史學論叢」(서울 : 지식산업사, 1981), 593~623쪽.

우리 사회의 유교적 가치 체계를 감안해 볼때 민주주의 가치를 그만큼 추구했다 것은 대단한 개혁 의지의 발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주제도라는 정치체제와 유교적 가치체계라는 두 가지의 강력한 기존체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반작용의 힘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야 마땅하다. 사실상 근 1세기 전에 「독립신문」이 강조했던 민주주의 가치가 오늘날의 시점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體現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독립신문」은 지금도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지 모른다.

「독립신문」에 나타난 민주주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를 볼때 自由보다 平等의 가치를 더 많이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平等의 가치들 가운데서 사회적 평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정의의 강조가 부족했다는 점도 역시 지적할 수 있겠다. 바로 그러한 점들이 당시의 정치체제와 가치체제가 주는 한계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관서의 장을 보통 평등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는 주장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한 목표의 제시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